

# 2025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 1 목 적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경력개발과 사회진출 기회 제공
-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을 통한 체육인재 전문성 제고 및 체육발전 기여

##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국내대학원 진학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 ○ 교육지원금 지원기준

-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다만, 학칙에서 인정하는 정규 수업연한이 5개 학기 이상인 경우, 5개 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 가능 \* 학칙 내 수업연한이 명시되어 있고, 연구등록 등이 아닌 정규등록일 경우
- 편입, 전공변경 등의 경우 수업연한 잔여학기만 지원 \* 사전 요청 및 승인 필요

### ○ 지원 학위과정

- 석사,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별도 전공 제한 없음)
- 1인에게 1개 과정에 대하여만 지원가능(2회 이상 수혜 불가)  
예) 석사과정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박사과정 지원 불가

### ○ 지원금액

-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학·등록금 실비

## 3 지급대상자 선정계획

- (세부절차) (기존·신규)신청자 → 경기단체 → 체육회 → 공단

① 신청자

○ 본인 소속 경기단체에 신청(기존인원·신규인원) 및 서류 제출



② 경기단체

○ 경기단체장 : 기존인원·신규인원 신청 취합 후 추천



③ 체육회

○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기존인원) 계속지원·중지·종료 신청  
· (신규인원) 인원 평가(자체 기준) 후 우선순위 부여하여 추천



④ 공단

(기존인원) 적격여부 검토

(신규인원) 적격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등



○ 지급요건 충족 시 기존인원 계속지원 결정

○ 정량·정성 등 평가결과 반영  
종합점수 고득점자 선정 및 지원

□ (제출서류) [붙임4] 제출서류 세부내역(기존인원·신규인원) 참조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sup>0</sup>),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정량평가·정성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 학업계획서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인원이 지원 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에 있는 사람 제외
  - \* 5번 대상자 관리계획 내 복지후생금 지급 중지 부분 참조

[종합 평가점수 산출표] \* 세부내용은 [붙임5] 참조

구분	평가방법	반영비율
① 체육회 추천 순위	추천순위 분위별 점수 차등부여 * 체육회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름	50%
② 학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내·외부 평가위원 4명 구성	45%
③ 체육학문 발전기여	체육분야 전공 우대	5%

## 4 대상자 관리계획

□ (사후관리)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다음 학기 신청 혹은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 제출

가. 매 학기 이수 후

-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종료 후

-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를 변경 시 변경 2개월 이전에 통보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sup>0</sup> (100점 환산, 80점) 미만일 시 지원중지
- 휴학한 경우는 지급을 보류하되, 총 4개 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중지(교육기관 제적 처분 포함) \* 병역 또는 임신·출산 사유제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준용

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게 방지하는 제도

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외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장학재단 시스템으로 확인

- 총 수혜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 별도 조치 없음
- 총 수혜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클 경우 : 초과분 환수조치 가능

□ (복지후생금 지급 중지)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복지후생금 환수) \* 「체육인 복지법」 제2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보상금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7 추진일정

①모집공고	②신청·③추천	③접수·검토	④대상선정	⑤지급개시
공단 체육회 경기단체	▶ 경기단체 →체육회 →공단	▶ 공단	▶ 평가위원회 시행 등 대상자 선정	▶ 공단
공고일~3.14.(금)		3.17.(월)~	3월 중	3.31.(월)

\* 지급 일정은 신청인원 및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 임 1.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학업·연구계획서 양식 1부.  
4. 제출서류 세부내역(기존인원·신규인원) 1부.  
5.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종합평가표 1부. 끝.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안내(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가대표경력, 입상실적, 기타 지원금 수혜여부, 계좌번호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선정심사, 민원처리, 지급이력 관리, 만족도 조사, 범죄경력조회	<b>영구</b>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선정 및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필수항목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처리 근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b>주민등록번호</b>	체육인 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 붙임 3 | 학업 · 연구계획서 양식(진학계획 세부 작성)

성 명		학 교	
학위과정/ 재학학기	(석사, 박사)/	학과/ 전공	/
진학동기 및 목적			
학위취득 지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체육분야 기여 계획			
학업 및 연구계획서			

- A4 본 페이지 포함 2장 이내, 여백(위 15, 아래 10, 왼쪽·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5)
  - 글자모양(글자체 휴먼명조, 본문내용 12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여백 왼쪽·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아래 0.0pt)
  - 위 양식 미 준수 시 학업계획서 평가 기준점수(18점) 미달로 보아 **선정제외 가능**
  - 3번 항목 평가 시 심사위원에게 표절율(기존 논문과의 유사성 정도) 관련 자료 제공 및 참조 예정
- ※ 작성기준 안내 문구는 삭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4 제출서류 세부내역(기존인원 · 신규인원)

구 분	제출서류
1. 기존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li> </ul> </li> <li>○ 해당인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계속신청 시) 다음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li> <li>③ (수료 또는 졸업 시)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li> <li>④ (지원기간 연장 시) 사유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칙 등)</li> <li>⑤ (휴학 시) 휴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학증명서 등)</li> <li>⑥ (예금계좌 변경 필요 시) 통장사본 1부</li> </ul> </li> </ul>
2. 신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붙임1]</li> <li>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li> <li>③ 학업계획서 1부 [붙임3]</li> <li>④ 국가대표증빙자료 1부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발행)</li> <li>⑤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li> <li>⑥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li> <li>⑦ 지급대상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적금 또는 청약통장 등 제출 불가</li> </ul> </li> </ul>
※ 유의사항	<p>기존대상자 필수 공통서류 '이수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는 반드시 본 장학금 <b>접수 공고일 이후</b> 발급본 제출</p>

## 붙임 5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종합평가표

평가항목	배점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방법
① 체육회 추천 순위 (정량평가)	비 중		<b>50점</b>	체육회 산정순위에 따라 상위부터 <u>분위별 점수화</u> (분위별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점수 부여) 예) 2.1 → 2명
	구간	상위 10%이하	50	
		10%초과 25%이하	45	
		25%초과 50%이하	40	
		50%초과 75%이하	35	
		75%초과 90%이하	30	
		상위 90%초과	25	
② 학업계획서 (정성평가)	비 중		<b>45점</b>	계획서 작성내용에 따라 위원회 평가 후 점수부여
	1. 진학목적의 명확성		15	
	2. 학업수행에 대한 열의		15	
	3. 학업계획의 독창성 및 구체성 (표절여부 검토 등)		15	
③ 체육학문 발전기여	체육분야 전공		<b>5점</b>	재학(입학)증명서 전공확인
계	-		100점	-

\* 신규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수혜여부 **우선 검토**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국외유학)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 최종점수 동점자 발생 시 학업계획 평가점수 상위자 우선, 동률 시 체육회 순위로 판단

### ※ 학업계획서(정성평가) 세부 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진학목적의 명확성	15	15	12	9	6	3
2. 학업수행에 대한 열의	15	15	12	9	6	3
3. 학업계획의 독창성 및 구체성	15	15	12	9	6	3
계	45	-				

\* 3번 항목 평가 시 심사위원에게 표절을(기존 논문과의 유사성 정도) 관련 자료 제공